

회장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0. 11. 6.

개정 2024. 1. 2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관계단체의 대상 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체육회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 위촉에 대해 승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 승낙서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인수받은 서류를 회장선거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선거인 수 배정 기준) 위원회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상 단체를 3 또는 2로 나누어 등급을 구분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가 나오는 경우 그 중 상위 등급에 단체를 하나 추가하여 배정
2.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 또는 비율이 각각 같은 단체가 있는 때에는 해당 단체 모두를 같은 등급으로 인정하되, 해당 단체 수에서 1을 뺀 단체 수 만큼 아래 등급에서 제외하여 배정

3. 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

4. 규정 제10조제7항에 따른 직군별 선거인 수를 배정할 때에는 규정 제49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직군별로 등록된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 <개정 2024. 1. 23.>

제4조(선거인 후보자 추천 등) 삭제<2024. 1. 23.>

제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등) ① 위원회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지위를 가진 외부인사가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 사실과 그 열람절차 등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등”이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제기등이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정정 조치할 수 있다.

⑤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위원회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관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인 자격 여부 확인) 체육회는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거인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등록 준비절차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

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마감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규정 제17조제2항2호라목에 따른 증명서류를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등은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제9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후보자는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사무원등의 운영) ① 후보자가 선거사무원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원등이 서명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원등의 선임을 신고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사무원등은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제2항의 표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원등이 제2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사무원등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사무장은 1일 7만원 이내의 수당과 체육회 「여비규정」 별표1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실비
2. 선거사무원은 1일 5만원 이내의 수당과 체육회 「여비규정」 별표1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실비

⑥ 이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사무원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⑦ 선거사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는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제11조(선거운동의 방법) 규정 제21조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 총 8면 이내의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나. 후보자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후보자가 나목의 기한까지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위반한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발송할 선거공보가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라.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등은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또는 문자메시지(그림말, 음성·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

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나. 가목의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등은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회장선거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나. 삭제<2024. 1. 23.>

다. 선관위가 선거운동의 내용이 게시된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윗옷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윗옷(上衣)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등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 한해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을 포함한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에서는 할 수 없다.

5.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가. 위원회는 단독 혹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와 공동으로 후보자 대상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를 1회 이상 개최하되, 2회 이상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위원회는 후보자 모두에게 토론회의 공평한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

한 토론회 운영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후보자 이외의 사람은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가할 수 없다.

라. 위원회는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가.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기호 순에 따라 후보자별 10분의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나.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 체육회는 선거일 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에 대한 중계와 이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를 영상녹화하여 그 영상녹화물을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12조(선거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등 방법)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등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규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제재조치에 대한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4. 1. 23.>

1. 서면에 의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
2.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 단, 전자우편은 규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정보제공이 동의된 선거인에 한함.
3.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규격으로 10매
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
소에 각각 부착

부 칙 (2020. 11. 6.)

이 세칙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3.)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 1. 23.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원 위 축 승 낙 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전 화 번 호:
4. 전자우편(이메일):

위 본인은 제O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위축을
승낙하며,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표명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의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축 승낙인 ○ ○ ○ 인

대한체육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선거인명부 누락,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접수·처리 결과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

1. 후보자명:
2.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O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
운동용 정보자료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정보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대한체육회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확인서

1. 후 보 자 명:
2. 생 년 월 일:
3.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 제출 당시 직위 :

(대한체육회/추천단체명)은 위 본인이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일자 : 2000년 월 일

년 월 일

(대한체육회/추천단체명) (직인)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서

후 보 자	소 재 지	(설치)·(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 고

0000년 00월 00일 실시하는 제00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선임)·(해임) 신고서

(선임)·(해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비고

2000년 00월 00일 실시하는 제0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선임)·(해임)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선거인명부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취급 보안서약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전 화 번 호:
4. 서약자의 신분(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위 본인은 제0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취급 준수사항

1.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년 월 일

서약자명 ○ ○ ○ ㉠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선거사무원등의 표지

신 분 명

(제0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이 증명서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

2. 이 증명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호 0번

12.5cm

9.5cm

주 : 1. “신분명”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중 해당 신분을 기재함.
2. 이 표지는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선거별·신분별로 구분하도록 색상·모양 또는 크기를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음.

선거사무원등의 표지 재교부 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 가. 신 분: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
- 라. 주 소: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분실자

○ ○ ○ [인]

후보자

○ ○ ○ [인]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 1. “신분명”란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2.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회장선거에 관한 신고 등 신청서

신고 등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내용 및 사유	신고 등 내용	
	신고 등 사유	
년 월 일 실시 대한체육회장선거에 대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신고 또는 이의제기자 ○ ○ ○ (서명)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신고 또는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또는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

(중지)·(경고)·(시정명령) 통지서

- 1. 처분대상자:
- 2. 처 분 대 상:
- 3. (중지)·(경고)·(시정명령) 내용: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귀하가 제O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하였기에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지)·(경고)·(시정명령) 처분하오니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00. 00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통보서(게시문)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000 또는 000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000)이 제O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게시)합니다.

2000. 00. 00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